함평군 고시 제 2015 - 41호

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『낚시관리 및 육성법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. 선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선 원 및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

- ① 어선검사증서에 "야간항해가 금지됨"으로 표시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
- ②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~22:00까지로 한다.

제4조(영업구역의 제한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진흥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 - 2. 문화재보호법,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호구역
- ②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낚시인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

- ①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
 - 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은 낚시어선의 안전 및 안전용품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나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(선주 또는 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.
 - 나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다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시 인근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라.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(마약 등) 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의 조종을 금지한다.
 - 마. 낚시어선 승선정원,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이용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

- 가.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,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나.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인을 승선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다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,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은 승선시키지 않아야 함
- 라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 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마.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사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,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.
- ③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사항
 - 가. 해상에 유류·분뇨·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, 쓰레기는 낚시어선 내

장소에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.

- 나. 낚시도구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다.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에 적합한 미끼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라.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려서는 아니 된다.
- 마.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포획 금지 수산동물의 종류, 체장(체중) 및 포획 금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4)

- 가.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 할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,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나.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·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)

- ① 승객은 승선한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승객은 해양오염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가.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나. 미끼의 안전성이 확보된 미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다.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 및 낚시도구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- ③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『수산자원관리법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,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- ④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,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
- 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⑤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의 대피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응하여야 한다.
- ⑥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.
- ②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(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)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 나목, 다목 및 제6조제2항의 나목, 다목의 규정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고시의 폐지) 함평군 고시 제2008-12호(2008.03.21.), 제2013-60호 (2013.10.14.)은 폐지한다.

[별표]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시항의 게시방법

1. 게시판의 제작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나. ①글씨 : 검은색

②바탕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-흰색/승객준수사항-노란색

- ③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의 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- 2. 게시판의 부착장소 :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- 3. 게시방법의 예시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

승선정원

승객 준수 사항

명

- 1) 승객은 승선한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2) 승객은 해양오염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낚시도구를 사용
 - 나.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 및 낚시도구는 전량 수거
- 3)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, 체장(체중)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4)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- 가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- 다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 - 라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- 마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이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
- 5)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의 대피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6)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합니다.